

##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 제출 관련 FAQ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Q1) 기업이 생산/수입하는 모든 제품모델을 평가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제품군별로 1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세탁기, 냉장고 및 TV를 생산/수입한다면 세탁기 1개 모델, 냉장고 1개 모델 및 TV 1개 모델 등 총 3개 모델을 평가해야 합니다.

Q2) 대표모델의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대표모델은 제조사/수입업자 관계없이, 2022년도 기준으로 판매량(출고량)이 가장 많은 제품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표모델과 과거의 평가모델이 동일한 경우 2022년도에 차상위로 판매량이 많은 모델 또는 재질·구조사항이 개선된 제품을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Q3) 평가방법이 2개 방법(단일평가 및 비교평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어떤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하나요?

A3) 평가방법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표1. 비교평가 및 단일평가 적용 제품목록

평가방법	제품
비교평가(8종)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단일평가(41종)	그 외 모든 제품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스캐너, 빔프로젝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제습기, <u>내비게이션</u> , <u>토스트기</u> ,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유무선공유기, 전기안마기

\* 밑줄은 22년부터 신규 대상품목임.

Q4) 사전분리대상 부품 및 재질은 무엇입니까?

A4) 일반적으로 재질 및 구조개선 평가 항목에서 사용되는 사전 분리 부품 및 재질 대상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2. 사전분리대상 부품 및 재질목록

- 폴리염화비페닐(PCB) 함유 축전기
- 스위치나 후광 램프와 같은 수은 함유 성분
- 전지
- 이동전화단말기 인쇄회로기판
- 개인용컴퓨터 인쇄회로기판
- 인쇄회로기판 표면이 10 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의 다른 장치 인쇄회로기판
- 플라스틱 함유 브롬처리 내연 제품
- 석면 폐기물과 석면을 포함한 부품
- 음극선관
- CFC(염화플루오르화탄소)나 HCFC(수소화염화불화탄소), HFC(수소불화탄소), HC(탄화수소)
- 배기 램프
- 100 제곱 센티미터 이상 표면의 LCD (적합한 외피 포함)와 배기 램프로 배경 조명이 되는 것들
- 외부 전기 전선
-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구성 요소
- 전해질 축전기 (높이>25mm, 직경>25mm, 혹은 비슷한 크기)

**Q5) 평가비대상 제품은 무엇입니까? 비대상사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5)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군)은 올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업은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 온라인(www.ecoe.or.kr)으로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증빙서류 첨부 필수)해야 합니다. 제출하신 비대상사유서는 KEA에서 8월 중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처리합니다.

표3. 평가 비대상 사유 및 필요한 증빙자료

구분	증빙(첨부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년도에 평가대상 제품을 시장에 공급한 실적이 없음</li> <li>• 평가년도에 평가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한 실적이 없음</li> </ul>	비대상사유서서식(hwp)을 서명 스캔하여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년도에 평가대상 제품의 전 제품(모델)이 기 평가한 제품(동일모델)임</li> <li>• 평가년도에 평가대상 제품의 전 제품(모델)이 기 평가한 제품과 재질구조 변경이 없는 제품(파생모델 등)임</li> </ul>	기 평가한 제품(동일모델)의 평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년도에 연구개발, 테스트(시험장비) 등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제조수입하지 않은 제품임</li> </ul>	연구개발 또는 테스트(시험) 활동 증빙(보고서 등)

\* (주의) 단순히 판매량(수입량)이 소량인 경우는 비대상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평가서에서 증빙서류는 무엇을 첨부합니까?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까?**

A6) 평가서에서 증빙서류는 규정된 서식은 없고, 문항별로 설명이 가능한 문서 또는 자료를 자유롭게 첨부하시면 됩니다.

\* (증빙자료 예) 개선 전/후의 자체 재질구조분석자료, 사진, 분석서류

**Q7) 평가서 온라인 제출 외에, 현장심사 또는 제품 실물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까?**

A7) KEA에서는 평가서 온라인 접수 및 심의 외에, 별도로 현장심사 또는 제품 실물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 심의회에서는 일부 기업에 대하여 추가검토를 위한 내방(대면심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심의 방법 : 기업에서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결과 내용 설명(10분) → 질의응답(5분)

\*\* 해당 기업은 평가서 접수완료 후,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다만 이와 별도로, 환경부 및 산업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시설·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사후조사) KEA는 사후조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해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8) 전년 대비 평가항목 또는 작성방법의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A8)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Q9) 제품정보에서 출고일자는 어떤 날짜를 기재합니까?**

A9) 출고일자는 평가년도(작년) 중 제품의 최초 출고일을 기재합니다. 매년 출고되는 제품이라도 평가년도(작년) 중의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Q10) 환경성보장제(EcoAS)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됩니까?**

A10) KEA는 전자제품 재질구조개선 평가서의 접수·심의·정부제출만을 수행합니다. 환경성보장제 관련해서는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처, 또는 관할 환경공단 지역본부로 문의 바랍니다.